## 2025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제작지원 협약서

경기콘텐츠진흥원(이하	"관리기관")과	(성명)	(채널명)		
(사업자명)	(이하	"수행기관")은	"2025 경기도 1인	크리에이터	제작지원"
(이하 "지원사업") 사업 <u>9</u>	의 권리 및 의무	준수를 위하여	아래와 같이 약정을	· 서결한다.	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의 목적은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리기관과 수행기관의 권리·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지원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.

제2조(목표 및 내용) ①수행기관의 목표 및 내용은 별첨된 "사업수행계획서"(이하"계획서"라 한다)와 같다. 수행기관은 계획서에 근거한 사업수행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일체의 결과보고를 완수할 의무를 진다.

②수행기관은 제작기간 동안 단계별 지원금 및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되며 내용과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.

구분	내용			
지원내용 (40팀)	1단계	40팀	<ul> <li>제작비 콘텐츠 당 10만원(최대 40만원)</li> <li>의무사항</li> <li>집계 콘텐츠 내 로고 삽입</li> <li>공익 콘텐츠 1편 이상 업로드 : 봉공이 활용 / 도정홍보</li> <li>개별 컨설팅 5H 지원(3H 이상 의무 참석)</li> <li>네트워킹 1회 이상 의무 참석</li> </ul>	
	선발기준		- 단계 진출 기준 [1+ 단계종료구독자수 — 전단계구독자수 전단계구독자수 *총 콘텐츠 시청시간 : 집계 콘텐츠(공익 포함)의 시청시간	
	2단계	20팀	<ul> <li>제작비 콘텐츠 당 60만원(최대 240만원)</li> <li>의무사항</li> <li>집계 콘텐츠 내 로고 삽입</li> <li>공익 콘텐츠 1편 이상 업로드 : 봉공이 활용 / 도정홍보</li> <li>개별 컨설팅 5H 지원(3H 이상 의무 참석)</li> <li>네트워킹 1회 이상 의무 참석</li> </ul>	
	선발기준		- 단계 진출 기준  - 단계 존료구독자수 — 전단계구독자수 [1+ 전단계구독자수 ] X [총 콘텐츠 시청시간]*  *총 콘텐츠 시청시간 : 집계 콘텐츠(공익 포함)의 시청시간	
	3단계	10팀	<ul> <li>제작비 콘텐츠 당 100만원(최대 600만원)</li> <li>의무사항</li> <li>· 집계 콘텐츠 내 로고 삽입</li> <li>· 공익 콘텐츠 1편 이상 업로드 : 봉공이 활용 / 도정홍보</li> <li>- 개별 컨설팅 6H 지원(5H 이상 의무 참석)</li> <li>- 네트워킹 1회 이상 의무 참석</li> </ul>	
	선발기준		3단계 10팀 중 심사를 통해 5팀 선정 지원사업 결과물 및 제출서류 기반 서면 평가	
	TOP5	5팀	- 우수 크리에이터 수요에 따른 특전 프로그램 제공 ex) 콘텐츠 기획자 지원, 편집자 지원, 채널 광고 등	
	지원	!금	- 의무사항 수행 점검 → 지원금 지급	

지급절차 - 구비서류 : 민감 정보제공 동의서, 사업수행계획, 사업수행결과 등

- \*최초 구독자 수는 협약일+1영업일 기준으로 책정되며 단계별 구독자, 조회수 기준일은 관리기관이 정하는 날로 한다. ③2항의 '집계콘텐츠'는 로고 규정을 준수하여 업로드 된 콘텐츠를 말한다.
  - ④2항의 '공익 콘텐츠'는 아래의 호를 주제로 한 콘텐츠를 말한다. 수행기관은 각 호에서 선택하여 2항의 '공익 콘텐츠'를 수행해야 한다. 1, 2, 3단계의 공익콘텐츠를 제작 및 업로드 하지않을 경우 다음단계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. 공익콘텐츠는 시청자가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영상 길이가 짧거나 주제가 모호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.
    - 1. 경기도 캐릭터 '봉공이' 활용
    - 2. 도정홍보(경기도 정책홍보)
  - ⑤2항의 각 단계별 탈락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본 지원사업의 모든 참여자는 모든 단계의 네트워킹 프로그램에 참석 할 수 있다. 다만, 탈락하지 않은 수행기관은 각 단계별 네트워킹을 1회 이상 의무 참석해야 한다.
  - ⑥수행기관은 제작 기간 동안 집계를 원하는 콘텐츠 및 공익 콘텐츠에 관리기관에서 제공한 '2025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제작지원' 로고를 삽입하여야 한다. 로고 삽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서 정한다.
  - ⑦2항의 집계콘텐츠는 타 공공기관의 지원사업과 중복할 수 없다. 민간기업의 광고는 예외로한다.
- 제3조(사업기간) ①본 협약서 상 "협약기간"은 제작기간, 성과보고자료 제출, 중간점검 등 지원 사업 완료에 소요되는 기간을 말하며, 협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협약 기간의 연장은 불가하다.
  - ②구체적인 사업수행 내용별 기한은 아래와 같다. 서면요청 및 사전협의 없이 수행기관이 기한 내 해당 수행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"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"에 따른 제재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.

구분	기한
제작기간	2025년 11월 30일(일) 24:00까지
지원금 지급	각 단계 종료 및 지원금 지급 서류 취합 완료 후 15일 이내
최종 성과보고 및 우수 크리에이터 선발	2025년 12월

- 제4조(지원금 지급) ①관리기관은 제2조 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작된 콘텐츠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.
  - ②수행기관은 협약체결 후 관리기관에게 지원금 교부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, 관리기관은 각 단계별 지급 대상자의 신청서 수령 및 취합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한다.
  - ③단, 본 협약서에서 정한 제반사항의 이행이 수행기관에 의해 지연되거나 수행기관의 귀책사 유로 인해 미흡한 경우 관리기관은 지원금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.
- 제5조(중도포기) ①관리기관은 제8조의 조치에 따른 조치 또는 제9조에 따른 협약해지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수행기관이 지원사업을 협약기간 동안 포기할 경우 제2조 2항의 기준에 따라 제작 및 업로드한 영상콘텐츠 편수만큼 지원금을 지급한다.
  - ②1항의 영상 콘텐츠 편수에 대한 인정요건은 다음 호와 같다.

1. 1단계 : 편당 10만원(최대 40만원)

2. 2단계 : 편당 60만원(최대 240만원)

3. 3단계 : 편당 100만원(최대 600만원)

③관리기관은 2조 2항의 각 단계의 기간별 1/2시점 이전 포기자 발생 시 선발 후순위자 대상 의견 타진 후 추가 투입할 수 있다.

**제6조(권한의 이용)** ①수행기관은 원활한 지원사업 운영과 수행기관의 성장을 위해 수행기관 채널 관리자 권한 및 초상권 이용에 동의한다.

②수행기관은 1항의 채널 관리자 권한을 관리기관 및 지원사업 운영 대행사, 대행사의 컨설턴 트에게 부여한다.

③수행기관은 1항의 초상권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기타 간행물 등에 본인의 초상이 도화, 사진, 영상 등의 매체를 통해 복제, 배포, 공중송신,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되는 것에 동의한다.

④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수행기관에 귀속됨. 다만, 관리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기타 간행물 등에 비영리목적으로 무상사용 가능하다.

제7조(협약 변경) ①관리기관과 수행기관은 필요시 서면요청을 통해 상호협의 후 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. 단, 제3조의 협약기간은 변경할 수 없다.

②계획서 또는 협약 변경사항 발생 시 "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"에 의거 승인여부를 결정한다.

제8조(수행기관의 문제행위에 대한 조치) ①관리기관은 "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참가 자 가이드라인"에 근거하여, 수행기관의 문제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본 지원사업에서 규정하는 유형별 문제행위는 아래와 같다.

	○ 저작권 침해				
	○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				
	○ 부정확한 정보전달				
1인	○ 정치편향적인 콘텐츠				
크리에이터	O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				
유형별	○ 콘텐츠를 통한 불법행위 조장				
문제행위	○ 추천·보증 등에 관한 표시·광고 심사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(뒷광고 등)				
	○ 영상, 댓글,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한 모욕 등 부적절한 행위				
	○ 참가자의 탈세, 음주운전, 성범죄 등 불법행위				
	○ 그 외 참가자의 일탈행위, 부적절한 콘텐츠 및 채널운영으로 사업 지속이 어려운 경우				

②모니터링, 언론보도, 민원제기 등을 통해 문제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리기관은 이 사실을 수행기관에게 통지하고, 소명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본 지원 사업을 위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문제행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,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다.

심의결과에 따른 조치사항	○ 주의 : 심각성이 낮고, 충분한 소명과 시정이 이루어져 재발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        - 절차 : 심의결과 서면 통보 → 재발방지 확약서 제출 → 모니터링 지속         - 주의 3회 = 경고 1회로 간주         ○ 경고 : 심각성이 높고, 재발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       - 절차 : 심의결과 서면 통보 → 재발방지 확약서 제출 → 모니터링 지속         - 경고 2회 = 협약 해지로 간주         ○ 협약 해지 : 심각성이 매우 높고, 충분한 소명과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        - 절차 : 협약해지 및 지원금 지급불가 서면통보, 기지급 지원금 환수         - 필요시 관련규정에 근거한 추가 제재조치 시행
추가 조치사항	○ 비공개 처리         : 문제행위가 포함된 지원작 또는 게시물, 댓글 등에 대한 비공개 처리 요구           - 절차 : 비공개 처리 통보 → 비공개 처리 완료 후 보고 / 재발방지 확약서 제출           - 비공개 처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협약 해지 조치 가능           ○ 지원금 부분환수 : 비공개 처리된 지원작에 해당하는 지원금 환수(기지급 되었을 경우) 또는 미지급           - 환수 금액 산정기준 : 단계별 콘텐츠 단가 적용

④관리기관은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확정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수행기관에 서면통보하고, 그에 따른 후속절차를 진행한다.

⑤수행기관은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면통보일로부터 일주일 이내, 1회에 한하여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⑥관리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신청 공문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과를 확정하여 서면 통보해야 한다. 사안에 따라 자체 검토 후 종결하거나, 필요시 심 의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제9조(협약 해지) ①관리기관은 "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" 제18조에 따라,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.

- 1. 수행기관이 본 협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제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관리기관이 판단한 경우
- 2. 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분이 허위사실로 판명되는 경우 (예: 제출 서류의 위·변조 사실이 판명된 경우 등) 단, 이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고의·과실을 불문한다.
- 3.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불이행한 경우
- 4. 수행기관이 정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사업자임이 협약 체결 후 밝혀진 경우
- 5. 수행기관의 문제행위에 대한 심의결과가 제8조 3항에 명시된 '협약 해지'에 해당하는 경우
- 6. 사업운영 핵심 담당자(크리에이터 등)의 퇴사, 부도, 법정관리, 폐업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관리기관이 판단하는 경우
- 7. 사전 협의 없이 정해진 기간 내 성과보고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수행기관의 고의·과실을 불문하고 과제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- 8.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, 노출된 콘텐츠를 협약기간과 협약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비공개, 삭제 조치하는 경우
- 9. 협약기간과 협약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수행기관의 채널을 삭제하거나 사업자를 폐업하는 경우

②제1항에 기재한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, 관리기관은 수행기관에게 동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협약을 해지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.

③협약 해지에 따른 제재조치는 "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"에 따르며, 관리기관은 귀책사유에 따라 수행기관에게 2년 이내 관리기관의 관련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.

- ④지원금 환수조치 시 수행기관은 협약 해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미 지급된 지원금과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반납 당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관리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, 이 때 이자율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적용한다.
- 제10조(권리·의무 승계의 제한) 수행기관은 관리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제3자에게 양여 또는 승계할 수 없다.
- 제11조(관계자료 제출 등) ①수행기관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의 지원사업 현장확인, 관계서류 의 열람, 관계 자료의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  - ②수행기관은 협약종료 후 2년간 관리기관의 사업실적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한다.
- 제12조(기타권리) ①관리기관은 본 지원사업 결과물을 홍보 및 비영리 목적 활용할 수 있다. ②본 지원사업 과제수행내용이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 책임은 수행기 관이 부담한다.
- 제13조(보안) 관리기관과 수행기관은 과제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지원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성과 등이 사전합의 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해야 하며, 기술이나 정보 등을 부당하게 유출하였을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법적 제도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신의성실 및 상호협조) ①관리기관과 수행기관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  - ②관리기관은 협약기간 동안 수행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로 사업수행내용에 관하여 협의 해야 하며, 수행기관 또한 필요사항을 관리기관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  - ③수행기관은 관리기관이 제공하는 '역량강화 프로그램'에 적극 참여한다. 관리기관은 중간평가 시 수행기관의 프로그램 참여도를 평가 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.
- 제15조(해석) 본 협약서 상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아래 관리규정에 준하여 상호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.
  - 1. 관리기관의 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
  - 2. 기타 관리기관의 제반규정
- 제16조(관할법원) 관리기관과 수행기관 사이에 발생한 법적 분쟁은 관리기관의 주소지 소재의 관할 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지정한다.
- 제17조(협약의 효력)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관리기관과 수행기관이 각각 1통씩 보관하며,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.
- 붙임. 1. 사업수행계획서 1부
  - 2. 사업자등록증 1부

- 3. 인감증명서 1부
- 4. 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 1부

## 2025년 월 일

관리기관	7	병기콘텐츠진흥원	원장	탁용석	(인)
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98번길 18 (춘의테크노파크 2차 202동 9층)					
수행기관	성명		대표 (성명)		
	채널명				(인)
	사업자명		(00)		